대구광역시수성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 1691호

2026년 수성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7일

대구광역시수성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임용기간	근무부서 (근무장소)	담당업무
기계실 운영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	2명	2년	체육진흥과 (수성행복드림센터)	· 수영장 기계실 운영 및 시설 관리 제반 업무 · 수영장 등 기계설비 운전·점검·관리 · 수온 및 수질 관리 · 센터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 기계실 기간제근로자 현장관리 · 기타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업무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근무성과평가를 통해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4, 7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제35조
▢ 「대구 수성구 임기제공무원 업무처리 지침」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응시연령 : 18세 이상(기준일 : 공고일 현재)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임용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아래의 임용자격 기준(1~3)을 모두 갖춘 자

구분	임용자격기준	채용직무 및 경력분야
기계실 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 국가기술자격법령 상 가스기능사 자격 이상* 보유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가스 안전관리 분야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그 밖의 기관에서 다중이용시설 기계실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실무 경력 ·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3. 토·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 가능한 자	다중이용시설*** 기계실운영 및 시설물 관리 실무 경력

1) ***다중이용시설 : 체육시설법상 '수영장'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수영장 또는 목욕장'이 있는 시설

2)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

3)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

4) 전임근무(8시간/1일)가 아닌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예시 : 주20시간 근무)**,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삭제 <2022. 1. 4.>
   바.삭제 <2022. 1. 4.>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조건** : 주35시간

- 05:00~13:00 | 14:00~22:00 교대근무

※ 근무요일 및 시간대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기타 별도 명시하지 않은 복무관련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함

▢ **근무장소** : 체육진흥과(수성행복드림센터)

- 위치 : 수성대학교 정문 입구(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26길 50)

▢ **근무시작예정일 : 2027. 1월 중** ※ 임용절차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연봉 하한액 책정이 원칙
- 하한액이 없는 9급의 경우 일반직공무원 9급을 1호봉을 기준으로 하되,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와 선발인원의 경력 유사성을 검토하여 일부 호봉에 반영할 수 있음
- 근무시간(주당 35시간)에 비례하여 연봉책정

구 분	상한액 주40시간	하한액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9급상당)	54,678천원	-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제50조제1항)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예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1. 17.(화) ~ 11. 27.(금)	2026. 11. 30.(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www.suseong.kr) 게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으며, 조정될 경우 별도 통보

▢ **1차 시험(서류전형)**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관련분야 근무경력 평가 등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수성구 홈페이지(www.suseong.kr)에 공고

▢ **인성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 면접시험 포기자로 간주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결과분석 자료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여 면접심사 참고자료로 활용

▢ **2차시험(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 후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 합산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임용자격이 부여됨
- 적격자가 없을 경우(모두 불합격인 경우) 선발하지 않으며 재공모함

▢ **최종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www.suseong.kr)에 공고

- 면접전형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사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접수**

- 교 부 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www.suseong.kr)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26. 11. 17.(화) ~ 11. 27.(금) 09:00~18:00**
  (공휴일, 중식시간 제외 12:00 ~ 13:00)
- 접 수 처 : 수성구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2팀 ▸ 수성행복드림센터 1층 체육센터사무실)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봉투 겉면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문구 표기
  · 주소 : 우(42078)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26길 50(만촌동)
  (수성행복드림센터 1층 체육센터 사무실)

※ 방문접수는 근무시간 내 접수(09:00~18:00)(중식시간 제외:12:00~13:00)

※ **우편접수 시 반드시 도착여부 유선 확인 바람(☎053-666-3184)**

※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7. 제출서류

☞ 아래 순서대로 정렬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5,000원(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첨부)

※ 수성구 수입증지 판매처 : 수성구청(본관 1층)내 민원여권과 7번 창구

※ 우편 접수 시 응시수수료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③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및 자격은 인정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⑧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⑨ **관련분야 자격증**

⑩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및 증빙자료 원본** 1부(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

-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기재),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날인),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 (예시 : 주 20시간 근무)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개별적 사유로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회사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공무원 경력 증빙은 재직증명서가 아닌 경력증명서(징계현황 포함) 제출

※ 원서 접수일 이후에는 기제출 경력사항이 아닌 새로운 경력사항에 관한 추가서류 제출 불가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필히 첨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최종결과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 포함)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추가서류 제출 불필요(당초 지원서류로 갈음)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수성구 홈페이지(www.suseong.kr)에 공고합니다.

○ 공무원연금법 개정 및 시행('18.9.21.)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퇴직공무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직할 경우, 공무원연금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수성구 체육진흥과 체육시설2팀(☏ 666-31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직무기술서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직류)	선발예정인원
기계실 운영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2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체육국 체육진흥과

주요업무	○ 수영장 기계실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제반 업무 - 수영장 등 기계설비 운전·점검·관리 - 수온 및 수질 관리 - 센터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 기계실 기간제근로자 현장관리 - 기타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업무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조직이해능력(조직체제이해능력) ○ **(직급별 역량)**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컴퓨터활용능력 ○ **(직렬별 역량)** 판단력,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수영장 및 건축물 내 기계설비(공조, 보일러, 급배수·펌프 등)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관한 지식 ○ 수영장 수질 기준, 여과기 및 수처리 약품·소독설비 운영 원리에 기반한 수온·수질 관리 실무 지식 ○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건축물 안전점검 및 관련 시설관리 법규에 대한 이해 ○ 현장 근로자 관리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 지식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 기계실 운영**
자격기준	○ 국가기술자격법령 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그 밖의 기관에서 다중이용시설 기계실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실무 경력 ·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 토·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 가능한 자